

1996年度 第3回 追加更正 歳入 - 歳出 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6年度 第3回 追加更正 歳入・歳出 豫算案

審 查 報 告

1996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1996년 12월 21일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1996년 12월 2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1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6.1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企劃監査室長 丁 浩 文)

-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837억 6천 1백만원보다 30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총 868억 4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08억 6천 5백만원, 특별회계는 159억 8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은,

- 지방세 9천 2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 2억 8천 3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 임시적 세외수입 4억 4천 2백만원,
-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5억 2천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 국·시비보조금 사업 지정재우너으로 38억 6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제2회 추경예산 675억 9천 4백만원보다 32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총 708억 6천 5백만원의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은,

- 인건비 불용액 3억 4천 5백만원,
- 도로굴착 감소로 인한 부담금 3억 5천 9백만원,
-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3억 1천 3백만원 등 10억 1천 7백만원을 감액하여 재원조정 보통교부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분 5억 9천 4백만원을 상계 정리하였고,
- 노인,장애인,보육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비에 2억 5백만원,
- 구청 이정표,구정홍보용 카렌다 제작,상무신도심내 구민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중도금과 동사무소 신축비 등 필수경상경비에 2억 1천 8백만원을 계상함.

○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 시설대책 장비 및 자재구입 4천 2백만원,

○ 국·시비보조금으로,

- 양로시설 개보수,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 쌍촌우회하수도 마무리 공사비 등 12개 사업에 38억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특별회계는,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 3백만원
- 주차장 특별회계 1천만원
-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5억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161억 6천 7백만원보다 1억 8천 7백만원이 감소된 총 159억 8천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3. 위원회별 검토결과

▣ 운영위원회

(단위 : 천원)

기정예산액	제3회 추경예산안	증 △ 감	내역
1,147,934	1,147,934	0	해당사항 없음

▣ 기획총무위원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기정예산액	제3회 추경예산안	증 △ 감	비고
29,615,682	29,333,872	△ 281,810	기정예산의 0.9% 감액

-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절감이 대부분임.
- 상무신도심내 부지매입 중도금과 양1동사무소신축비 1억 6,564만 4천원이 계상된 상태임.
- 96 세정운영실적 우수구 상사업비(시비) 2,500만원이 증액됨.
-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됨.

■ 사회도시위원회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기정예산액	제3회 추경예산안	증 △ 감	비 고
36,830,764	40,382,827	3,552,063	기정예산의 8.8% 증액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기정예산액	제3회 추경예산안	증 △ 감	비 고
16,167,012	15,980,369	△ 186,643	기정예산의 1.2% 감액

○ 국비·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 보육시설 등의 사업 변경으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임.

○ 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 관련 시비보조금이 5억원이 삭감되어 53억 5,715만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가 편성되었음.

○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양로시설 개보수, 화정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비 등 2억 4,376만 8천원

○ 예비심사 후 원안가결됨.

4.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報告者 : 專門委員 徐 大錫)

○ 本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부활에 대한 의견

1997년도 구정홍보용 카렌다 제작 예산 1,500만원은 96년도 본 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집행에 의문점을 야기시키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매월 서구소식을 통해 구정을 홍보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별도로 구정홍보용 카렌다를 제작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됨.

○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재정운용의 혼란에 대한 의견입니다.

97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국·시비 보조금이 회계연도 말에 변경,추가 내시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을 명시이월해야 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2회 추경에서 쌍촌우회하수도공사비로 3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97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의 시비보조금을 계상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마무리 단계에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것 등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예산 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여짐.

5. 豫算案의 主要 問題点

: 없 음

6. 質疑 · 答辯要旨

: 생 략

7. 審査結果

: 원안의결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